

소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

- 구글 사건을 중심으로 -

최경진**

EU에서 새로운 일반정보보호규정안¹⁾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소위 “잊혀질 권리 또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최근 2014년 5월 13일에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구글의 정보 삭제와 관련한 판결²⁾이 내려짐으로써 잊혀질 권리의 논의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이 유럽의 현행 법제 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국내에 잘못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판결에 대한 정확한 소개 및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논의 및 입법 추진시에 고려할 사항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사건 개요

인터넷 이용자가 스페인 거주자인 곤잘레스(Mr Costeja González)의 이름을 구글 검색엔진에 입력하면, 각각 1998년 1월 19일과 3월 9일 자 La Vanguardia 신문 2페이지로의 링크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기사에는 사회보장재무의 집행을 위한 압류 소송과 관련한 부동산 경매와 연계하여 곤잘레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청원을 통하여 곤잘레스는 두 가지 청구를 하였다. 즉, (1) 곤잘레스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La Vanguardia에게 해당 페이지를 제거하거나 교체할 것 또는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색엔진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일정한 도구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 구글 스페인이나 구글 본사에게는, 곤잘레스의 개인정보가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이 중지되고 더 이상 La Vanguardia로의 링크에서도 나타나지 않도록, 곤잘레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숨길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곤잘레스는 그와 관련한 압류소송은 수 년 동안 완전히 해결되었고 현재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2010년 3월 5일, 곤잘레스는 신문사인 La Vanguardia Ediciones SL 및 구글 스페인(Google Spain), 구글 본사(Google Inc.)를 상대로 하여 스페인정보보호원(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이하에서 “AEPD”라 함)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2010년 7월 30일 AEPD는 La Vanguardia와 관련되어 있는 한, 문제되는 정보의 발행은 노동사회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적으로 정당하며 가능한 많은 입찰자들을 확보하기 위하

* 이 글은 2014.6.9.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픈넷포럼의 발표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후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논문 등에서는 수정 및 추가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 Case C-131/12,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AEPD), Mario Costeja Gonzalez* [2014]

여 경매를 최대한 알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곤잘레스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반면,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에 대한 범위 내에서 청원은 인용되었다. AEPD에 따르면, 검색엔진의 운영자는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정보 처리를 실행하고 정보사회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한다면 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AEPD에 따르면, 정보의 소재와 확산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보호의 기본적 권리 및 인간의 존엄과 절충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단순한 바람을 아우른다고 판단할 때에, 정보의 철회와 검색엔진 운영자에 의한 일정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금지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AEPD는 해당 사이트에 의한 정보의 보유가 제정법에 따라 정당화될 때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가 나타나는 웹사이트로부터 해당 정보를 삭제할 필요 없이 직접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는 스페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스페인 고등법원은 제청 명령에서 해당 소송은 제3자의 웹사이트에 발행되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들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일정 정보가 무기한 설치, 색인 및 인터넷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색엔진 운영자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이하 “DPD”라 함)이 공포된 이후에 나타난 기술의 맥락에서 DPD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스페인 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을 중지하고, ECJ에 다음과 같이 DPD 제2조 (b) 및 (d), 제4조 (1)(a) 및 (c), 제12조 (b), 제14조 제1문 (a)의 해석에 관하여 예비판결(preliminary ruling)을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2. 쟁점

가. DPD 및 스페인 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쟁점

- ① DPD 제4조(1)(a)의 의미 속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 “establishment”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판단
 - 회원국 주민을 향하여 활동하는 검색엔진 상의 광고영역을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국 내에 사무소 또는 자회사를 두는 경우
 - 모회사가 그 사업의 광고를 위하여 계약한 고객의 정보와 관련한 두 특정 파일시스템을 위한 대표 및 컨트롤러로 회원국 내에 소재하는 자회사를 지정한 경우
 - EU 외에 소재하는 모회사를 향하여 회원국 내에 설립된 사무소 또는 자회사가 정보보호를 위한 권리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가진 기관 및 정보주체에 의하여 다뤄진 요청 및 요건을 설정했을 경우, 그러한 협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② DPD 제4조(1)(c)
 - 검색엔진이 크롤러나 로봇을 이용하여 회원국 내의 서버에 존재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정보를 찾아내거나 색인하는 경우, 또는
 - 회원국에 속하는 도메인이름을 이용하고 회원국의 언어에 기초하여 검색과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 ③ DPD 제4조(1)(c)

- 인터넷검색엔진에 의하여 색인된 정보의 일시적 보관을 설비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가?
 - 만일 그렇다면, 사업자가 경쟁을 이유로 하여 색인을 보관한 장소를 공개하는 것을 거절한 때에 연결된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④ 연결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Charter 제8조에 비추어 DPD는 적용되어야 하는가? 회원국 국민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나. DPD와 관련한 콘텐츠 제공자로서 검색엔진의 활동과 관련한 쟁점

- ① 제3자에 의해서 인터넷에 발행되거나 포함된 정보를 검색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며, 최종적으로 특별한 우선 순위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구글 검색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은 제2조(b)의 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가?
- ② DPD 제2조(d)는 구글 검색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색인하고 있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컨트롤러로서 해석되어야 하는가?
- ③ 정보처리에 해당한다면 제12조(b) 및 제14조 제1문(a)에 규정된 권리를 보호하면서, 정보가 소재하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또는 동시에 웹페이지 그 자체를 다루도록 함이 없이, AEPD는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정보 항목을 색인으로부터 철회하도록 하는 요건을 구글 검색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가?
- ④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합법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되었고 근원이 된 웹페이지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보호할 검색엔진의 의무는 면제될 것인가?

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삭제권 및/또는 거부권의 범위와 관련한 쟁점

- 해당 정보가 합법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해로울 것으로 고려하거나 망각되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 제3자의 웹페이지에 발행되고 개인적으로 그와 관련된 정보의 색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색엔진에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로 제12조(b)에 규정된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할 권리와 제14조 제1문(a)에 규정된 거부권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가?

3. EU 지침

가. 전문

(2) 정보처리 시스템은 인간에 봉사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정보처리 시스템은 자연인의 국적 혹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진보, 무역의 확대 그리고 개인의 번영에 기여하여야 한다.

(10)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법의 목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8조와 공동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과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 그러한 이유로 회원국의 법을 접근시킴에 있어 보호를 축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동체 내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이 지침에 의하여 설정된 개인을 위한 보호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체 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회원국들 중의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에서 설립된 컨트롤러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처리는 컨트롤러가 설립된 회원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19) 회원국의 영토에서 컨트롤러의 설립은 Stable arrangements를 통한 활동의 유효하고, 실재적인 실행을 의미한다. 해당 설립의 법적 형식 즉, 단순한 지점인지, 자회사인지의 여부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수 개의 회원국의 영토에서 특히 자회사의 형식에 의하여 하나의 컨트롤러가 설립된 경우, 국내 규범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트롤러는 설립된 각각의 자회사가 그것이 활동하는데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0) 제3국에서 설립된 자에 의하여 정보의 처리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침에서 규정된 개인의 보호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처리는 처리의 수단이 소재한 회원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가 사실상 존중될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25) 보호의 원칙은 한편으로 정보의 질, 기술적 보안, 감독기관에의 통지, 그리고 처리가 수행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처리를 책임지는 사람, 정부기관, 기업, 관청 혹은 기타 자에 부과되는 의무에 반영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리가 되는 것을 통지받을 권리, 정보에 대하여 협의할 권리, 수정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처리를 반대할 권리로써 정보의 처리의 대상자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제2조 정의

(a) '개인정보'라 함은 식별하였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정보주체)와 관련한 정보를 말한다. 식별할 수 있는 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특히 신원증명번호 혹은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인을 참조하여 그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이다.

(b) '개인정보처리'('처리'라 한다)라 함은 자동화 수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송, 확산, 기타의 사용, 정렬 혹은 조합, 방지, 삭제 혹은 파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수집, 기록, 조직, 저장, 채용 혹은 수정, 복구, 참조, 사용, 공개와 같은 개인정보를 실행하는 작업 혹은 작업장치를 말한다.

(d) '컨트롤러'라 함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단독 혹은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 정부투자기관, 행정기관 혹은 기타의 자(者)를 말한다. 처리의 목적과 수단이 국내법 혹은 국내규정 또는 공동체법 혹은 공동체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컨트롤러 혹은 컨트롤러를 지명하기 위한 특정한 기준은 국내법 혹은 공동체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다.

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자동화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하고, 개인정보를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할

의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의 제5편과 제6편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 그리고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의 안보(국가 안전문제와 관련한 처리작업시의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포함한다) 그리고 형법분야에서 국가의 행위와 관련한 처리작업과 같이 공동체법의 적용범위밖에 있는 행위의 과정에서의 처리
- 자연인에 의하여 순수하게 개인적 혹은 가사행위에 따른 처리.

라. 제4조 적용가능한 국내법

1. 각 회원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회원국이 이 지침에 따라 채택한 자국의 규정을 적용한다.

(a) 회원국의 영토에서 컨트롤러의 설립행위와 관련하여 수행된 처리의 경우. 수개의 회원국 영토에서 설립된 동일한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때에는 컨트롤러는, 회원국에 설립된 각각의 것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진 의무를 지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컨트롤러가 회원국에서 설립하지 않고, 국제 공법에 의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장소에서 설립된 경우

(c) 컨트롤러가 공동체의 영토에서 설립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를 목적으로 당해 회원국에 위치한 자동화된 혹은 기타의 장비를 이용하고, 당해 장비가 공동체의 영토를 통과할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2. 제1항 (c)호에 규정된 상황과 관련하여, 컨트롤러는 그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수행할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주재하는 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마. 제2장 제1절 정보품질과 관련된 원칙 하의 제6조 및 제2장 제1절 정보처리 적법성 기준 하의 제7조

제2장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일반원칙

제5조

회원국은 이 장의 규정에서 정한 제한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의 상세한 적법한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절 정보의 질과 관련한 원칙

제6조

1. 회원국은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따를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

(b) 특정되고, 명백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고, 해당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에 의하여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 역사적, 통계적 혹은 과학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재처리는 회원국이 적절한 보호조건을 규정하는 한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c) 개인정보가 수집 및 재처리가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고, 관련 있고 그리고 지나치지 않

을 것

(d) 정확할 것 및 필요하다면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 정보가 수집되었을 당시의 목적에 비추어, 부정확 혹은 불완전한 정보가 재처리, 삭제, 교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 수집된 정보의 목적 혹은 재처리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그 이상으로 정보주체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을 유지한다. 회원국은 역사적, 통계적 혹은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더 오랜 기간 저장될 개인정보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이 준수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컨트롤러를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2절 정당한 정보처리를 위한 기준

제7조

회원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a) 정보주체가 그의 동의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b)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 혹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

(c) 컨트롤러가 적용대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

(d)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

(e)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컨트롤러 또는 정보의 공개를 받는 제3자에게 유보된 공적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수행될 직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

(f) 컨트롤러 혹은 정보의 공개를 받는 제3자에 의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 다만, 해당 이익이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를 목적으로 한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와 표현의 자유

회원국은 보도목적 혹은, 예술적 혹은 문학적 표현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이 장과 제4장 그리고 제6장의 규정의 면제 혹은 예외는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프라이버시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사. 제12조 접근권

회원국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컨트롤러로부터 얻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a) 합리적인 간격으로 제한 없이, 그리고 지나친 지연 혹은 비용없이

- 정보주체와 관련한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확인 그리고 적어도 처리의 목적, 관련정보의 범주, 그리고 정보의 공개를 받을 수령인 혹은 수령인의 범주에 관한 고지

- 처리되고 있는 정보와 정보의 자료에 관한 유용한 사항에 대한 알기 쉬운 형식에 의한 정보주체에게 통지

- 적어도 제15조 제1항에 정해진 자동처리 결정의 경우 정보주체와 관련한 정보의 자동적 처리에 포함된 로직에 관한 정보

(b) 특히 정보의 불완전, 부정확한 성질로 인하여 이 지침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된 정보의 정정, 삭제 혹은 차단

(c)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가 (b)호에 따라 수행된 정정, 삭제 혹은 차단의 경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통지. 다만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 제14조 거부권

회원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a) 적어도 제7조 (e)호와 (f)호에 정해진 사항의 경우에, 정보주체가 처한 특별한 상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정보주체와 관련한 정보의 처리를 반대할 권리, 그리고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반대가 정당화되는 경우 컨트롤러에 의하여 교사된 처리는 해당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

자. 제28조 감독기관

1. 각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하여 회원국이 채택한 규정의 영토내의 적용에 대한 감시를 책임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적 기구를 두어야 한다.

해당 기구는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한다.

2. 각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한 행정적 조치 혹은 행정규칙을 정할 때에는 감독기구가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3. 각 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처리작업의 대상을 형성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 그리고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 등과 같은 수사권
- 제20조에 따라 처리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의견을 말하는 것과 같은 유효한 간섭권 그리고, 당해 의견의 공표, 정보의 유통금지, 삭제 혹은 폐기 명령의 공표, 처리의 잠정적·한정적 금지의 부과, 컨트롤러에 대한 경고 혹은 권고의 공표, 의회와 정치적 기관에 청원한 사항의 적절한 공표를 보장하는 유효한 간섭권
- 이 지침에 따라서 채택된 국내 규정에 위반된 경우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혹은 당해 위반을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

감독관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각 감독관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하여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협회에 의하여 제기된 청원을 들어야 한다. 관계인은 청원의 결과를 통지받아야 한다.

각 감독관청은 특히 이 지침의 제13조에 따라서 채택된 국내 규정이 적용된 때 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하여 검사하도록 제기된 청원을 수리하여야 한다. 행해진 검사는 청원 제기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5. 각 감독관청은 일정한 간격을 두어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6. 무엇이든지 국내법이 적용되는 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각 감독기구는 회

원국의 영토 내에서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기구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 각 기구는 다른 회원국의 기구에 의하여 그 권한의 행사를 요청받을 수 있다.

7. 회원국은 감독기구의 회원과 참모가 그 직무를 면한 후에도 그들이 접근한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차. 스페인법

DPD는 “Organic Law No 15/1999 of 13 December 1999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OE No 298 of 14 December 1999, p. 43088)”로서 스페인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4. 쟁점별 판결 내용

①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활동은, 구글이 그러한 활동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검색엔진이 컨트롤러로서 활동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다.

-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로딩하는 활동은 DPD 제2조(b)에 규정된 “처리”로서 고려되어야 한다.³⁾
- 위와 같이 검색엔진의 활동을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는 것은 개인정보가 이미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나 검색엔진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컨트롤러의 개념을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정보주체를 효과적이고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 제3자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찾고, 자동적으로 색인화하고, 임시적으로 보관하며, 특별한 우선 순위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검색엔진의 활동은 제2조(b)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 검색엔진의 운영자는 제2조(d)의 의미 속에서 처리의 관점에서 컨트롤러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구글이 회원국에서 해당 활동이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영역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Establishment를 창설하였다면, 그러한 처리는 EU의 정보보호기준에 따라야 한다.

- 검색엔진의 운영 활동과 관련 회원국 내에서의 Establishment 활동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수단은 그러한 활동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검색 결과에 개인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보의 처리를 의미한다. 검색결과가 표시되는 동일한 화면에서 검색어와 연결된 광고의 표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회원국 영토 내 컨트롤러의 Establishment의 상업적 광고 활동의 맥락에서 실행되는 점은 분명하다.

③ 개인은, 그 개인정보가 publisher에 의하여 삭제되거나 publisher가 색인 해제를 요청하

3) Case C-101/01 *Lindqvist* EU:C:2003:596, paragraph 25.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U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조건 하에서 검색엔진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색결과를 제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러한 요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AEPD(Spanish Data Protection Agency)와 법원의 보호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 ④ 만일 청구인이 공적인 관련성(public relevance)를 가지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는 일반적으로 “검색엔진 관리자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앞선다.

5. EU법제 하에서의 판결의 의미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검색엔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EU 및 스페인 법을 구글이 준수하기를 거부한 결과로서 그 당사자인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에 흠결이 발생하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 EU 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 이번 구글 판결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내용과 결과의 완전한 평가는 그 기초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고려사항의 신중한 분석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PD에 의하여 이해되고 ECJ에 의하여 확인된 것처럼, 잊혀질 권리는 절대적 권리로부터 거리가 먼 개념이며,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 범위는 실체화를 통하여 삭제 및 거부에 대응하는 권리와 부합한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인정은 어떤 식으로든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민주사회의 우월적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